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12
----------	-----

2020. 10. 1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5. 김세준 의원 등 7명

나. 상정의결

-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0. 10. 19.)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세준 의원)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나.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노인의 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제정안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음
-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 “노인”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였음. 이와 관련 서울시 자치구 중 본 제정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6개소로 이중 연령기준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자치단체는 2개소,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자치단체는 13개소, 연령기준이 없는 자치단체는 1개소인 바,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사유 및 대상자 수 등의 설명이 요구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노인일 자리를 개발·보급하고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구의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추진계획)제1항은 구청장이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추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3항에는 이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서울시 조례1)에도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1)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아울러, 2020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은 첨부[별표1]²⁾와 같으니
참고하기 바람

- 안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에는 구청장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정보의 접근성 및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는 구청장이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³⁾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기관 및 생산품 등의 현황 설명이 필요함
- 안 제7조(재정 지원)는 구청장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해당 법인 및 단체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에, 본 조례 제정은 노인 빈곤율 OECD 최고⁵⁾ 시대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5. 노인 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집행부 자료 재구성

3)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4. 7.>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2017년 기준 한국 은퇴 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2위인 미국(23.1%)의 2배에 가까웠다(출처: 한겨레 신문)

또한, 법⁶⁾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⁷⁾’,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등을 비추어보면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조례 제정 후 실질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임

-
- 6)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7) 조례제정현황(2020년 9월 현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별표1]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

□ 일자리 수행기관 : 강남시니어클럽 등 13개

□ 일자리 목표 : 3,000명(최대 3,359명)

□ 사업예산 : 11,816,005천원

□ 일자리 참여자(2020. 10.기준) : 2,660명

※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참여 축소

□ 노인일자리 사업 및 예산 현황

사업수행기관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량	사업예산-매칭 (활동비,부대경비)	사업예산-구비 (활동비,부대경비)	노인일자리 관련 인건비예산	노인일자리 관련 인건비 구비추가예산	기관별 총예산
			3,359	9,058,215,000	974,522,000	634,025,000	148,883,000	10,815,645,000
(사)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공익활동형	문화공연활동	20	63,000,000		50,722,000	5,200,000	736,322,000
	공익활동형	실버선생님	10	31,500,000				
	공익활동형	공원 및 놀이터 안전 지킴이	60	189,000,000				
	공익활동형	세곡동 환경정 비	50	157,500,000				
	공익활동형	노노케어	70	239,400,000				
강남구 노인통합지원 센터	공익활동형	놀이터 안전지 킴이	70	220,500,000		50,722,000	5,200,000	1,049,762,000
	공익활동형	노노케어(두런두 런 이야기)	180	615,600,000				
	사회서비스형	노인맞춤돌봄서 비스 지원 사업	20	157,740,000				
강남구 노인복지 관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공 시설봉사(힐링파 트너)	20	63,000,000		25,361,000	2,600,000	487,411,000
	공익활동형	학교 교통안전 지킴이	10	31,500,000				
	공익활동형	복지시설 이용 자 공익서비스 제공활동 (누리 선생님)	37	116,550,000				
	공익활동형	보육교사도우미 파견활동 (모모 선생님)	30	94,500,000				
	공익활동형	연중노노케어(해 피투게터)	45	153,900,000				

강남노 인송합 복지관	공익활동형	경로당중식도우미(매칭)	50	171,000,000		50,722,000	33,161,000	1,281,633,000
	공익활동형	경로당중식도우미(구비)	75		256,500,000			
	공익활동형	경로당청소도우미(매칭)	50	171,000,000				
	공익활동형	경로당청소도우미(구비)	80		273,600,000			
	공익활동형	학교 교통안전지킴이	30	86,400,000				
	공익활동형	공공시설 몰래카메라 안전지킴이	30	94,500,000				
	공익활동형	보육시설도우미	45	141,750,000				
	취업알선형	강남엑티브 시니어 취업알선사업	20	3,000,000				
강남시 니어클럽	사회서비스형	공회전제로사업	20	157,740,000		152,166,000	15,600,000	1,726,536,000
	시장형	에프터스쿨 매니저센터	24	64,080,000				
	시장형	해피콜지하철택배 사업	27	72,090,000				
	시장형	학교급식도우미 파견사업(소담급식)	131	349,770,000				
	시장형	아트클럽	33	88,110,000				
	시장형	Edu-클럽	27	72,090,000				
	시장형	사랑느낌	26	69,420,000				
	시장형	스마일아파트택배사업	10	26,700,000				
	시장형	적도마지하철택배 사업	16	42,720,000				
	시장형	골트리서치클럽	10	26,700,000				
	시장형	향기로온그대(시니어공동작업장)	10	26,700,000				
	시장형	신나는 스트링아트(실공예)	18	48,060,000				
	시장형	꿈나무교실	10	26,700,000				
	시장형	날아라 풍선아트	18	48,060,000				
	시장형	꿈꾸는 독서지도	28	74,760,000				
	시장형	숲생태지도자클럽	24	64,080,000				
	시장형	멋글씨 캘리그라피 사업	21	56,070,000				
	시장형	쿠킹클래스 사업	10	26,700,000				
	시장형	알록달록 종이접기 사업	66	176,220,000				
	취업알선형	강남실버인재파견형사업	280	42,000,000				

강남시 니어플 라자	공익활동형	공공시설지원단	50	157,500,000		50,722,000	5,200,000	561,842,000
	공익활동형	노노케어	16	54,720,000				
	시장형	서비스형 "아동 극파견활동"	16	42,720,000				
	시장형	서비스형 "급식 도우미파견활동"	72	192,240,000				
	시장형	마로니에 카페	12	32,040,000				
	시장형	쌀로 만든 건강 이야기 '미담'	10	26,700,000				
강남중 회관 복지관	공익활동형	지하철 안전지킴이	40	115,200,000		25,361,000	30,561,000	650,644,000
	공익활동형	우리마을지킴이	90	259,200,000				
	공익활동형	방문건강지킴이	32	100,800,000				
	공익활동형	생활영어단어지 도사(구비)	20		119,522,000			
남인중 회관 복지관	공익활동형	노-노케어	20	57,600,000		25,361,000	2,600,000	402,361,000
	공익활동형	지역사회환경개 선	30	86,400,000				
	공익활동형	공공자전거 대 여소 따릉이사업	20	57,600,000				
	공익활동형	복지시설관리지 원	10	28,800,000				
	공익활동형	근린생활시설관 리지원	40	115,200,000				
	공익활동형	도서관관리사업	10	28,800,000				
대청중 회관 복지관	공익활동형	복지시설지원활 동	10	28,800,000		25,361,000	2,600,000	507,661,000
	공익활동형	학교 교통안전 지킴이	15	43,200,000				
	공익활동형	근린생활시설관 리지원활동	60	172,800,000				
	공익활동형	친환경EM활용	40	115,200,000				
	공익활동형	경로당청소도우 미(경로당관리지 원활동)	15	51,300,000				
	공익활동형	노노케어'친친봉 사대'	20	68,400,000				
사회복 합연 산	공익활동형	경로당청소도우 미(매칭)	40	136,800,000		50,722,000	33,161,000	1,342,308,000
	공익활동형	경로당청소도우 미(구비)	40		136,800,000			
	공익활동형	경로당 중식 도 우미(매칭)	60	205,200,000				
	공익활동형	경로당 중식 도 우미(구비)	55		188,100,000			
	사회서비스형	복지시설지원사 업	75	591,525,000				

수서중합사회복지관	공익활동형	수서동환경지킴이활동	100	315,000,000	50,722,000	5,200,000	851,522,000
	공익활동형	노노케어활동	30	102,600,000			
	공익활동형	공공시설봉사단	40	126,000,000			
	공익활동형	아동청소년선도봉사단	80	252,000,000			
수서중합사회복지관	공익활동형	지하철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36	103,680,000	50,722,000	5,200,000	815,522,000
	공익활동형	EM생활환경지킴이	40	115,200,000			
	공익활동형	어린이교통안전지킴이	64	184,320,000			
	공익활동형	공공시설지킴이	80	230,400,000			
	공익활동형	노노케어	40	126,000,000			
압구정노인복지센터	공익활동형	지하철 안전지킴이	28	88,200,000	25,361,000	2,600,000	402,121,000
	공익활동형	놀이터 행복지킴이	26	81,900,000			
	공익활동형	어르신 특기나눔	30	94,500,000			
	공익활동형	노노케어	28	88,200,000			
	시장형	Take-out 실버카페 다사랑	8	21,360,000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노인복지법상 노인으로 보는 연령은 만 65세로 알고 있는데 본 조례안 제2조에서 “노인”을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 답 변 : 보통 정년퇴직하는 연령이 60세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60세 이후에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만65세보다는 만60세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임
- 질 의 : 건설회사 등과 MOU를 체결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신호수 등과 같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관련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 답 변 : 현재 강남구의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 사업 4개 분야(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에 약 3천여명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발굴과 더불어 직업훈련 등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제대로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김세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2
----------	-----

발의연월일 : 2020. 10. 5.

발 의 자 : 김세준·김진홍·복진경·
최남일·안지연·허주연·
이향숙(이상7인)

1. 제안이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나.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노인의 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다양한 노인일 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 자리를 개발·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